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 (홍영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93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의자 : 홍영진, 이명녀, 문기호  
정재환, 김도운, 박경흠  
강혜순, 안영호, 문희성,  
김태욱

###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을 지원하고, 노인 대상 성 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삶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4조)
-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의 실시(안 제5조)
- 전문기관과의 협력(안 제6조)
- 예산지원(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평가(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관계법규: 「노인복지법」 제4조

###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5. 10. 28. ~ 11. 4.(7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을 지원하고, 노인 대상 성 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삶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 젠더 기반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3.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이란 노인이 성평등 의식과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노인은 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은 노인의 연령, 이해도,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존엄성과 인권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대상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 운영

3. 성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4.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피해노인을 위한 상담 지원

② 구청장은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과 관련한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의 양성평등 의식, 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 개선

2. 성적 자기결정권 및 존엄성의 이해

3.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4. 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5.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위협에 대한 대응 교육

제6조(전문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노인의 성 인식과 교육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

22 (제278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 거 법 규

### □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소 속: 노인장애인과
- 직 급: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성 명: 동경선
- 연락처: (052)290-3613